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권 인 순 의원)

|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|
| 의 안<br>변 호 | 25-16 |
|------------|-------|

발의년월일: 2025. 2. .

발의자: 권인순, 강동오, 고병준, 김승수,  
남해석, 신종갑, 채우진, 한선미,  
홍지광

### 1. 개정이유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 
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‘대안교육’, ‘대안교육기관’ 용어 정의 정비(안 제2조)

나. 위원회 명칭 정비(안 제5조)

### 3. 관계법령

가.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

나.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

### 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5. 2. 19 ~ 2. 24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대안교육”이란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
3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마포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<br>1. (생략)<br>2. “ <u>대안교육</u> ”이란 <u>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그리고 진학·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.</u><br>3. “ <u>대안교육기관</u> ”이란 제2호의 “ <u>대안교육</u> ”을 행하는 기관으로써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.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<br>1. (현행과 같음)<br>2. “ <u>대안교육</u> ”이란 「 <u>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<br><br>3. “ <u>대안교육기관</u> ”이란 「 <u>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 |
| 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<br>② 위원회의 기능은 “ <u>마포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</u> ”에서 대신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 “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</u> ”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청소년복지 지원법

### ( 약칭: 청소년복지법 )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87호, 2021. 1. 12., 제정]

- 제10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
-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#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

## (약칭:대안교육기관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안교육”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.
2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시설등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해당 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조례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없음

4. 작성자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교육체육국 교육청소년과 권예인 |
| 연 락 처  | 02-3153-8984     |